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사등화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부재, 관련 기준·절차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관 고시(항공등화 설치 및 관리 기준)를 개정하고자 함

* (유사등화)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가 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

2. 주요내용

가. 유사 사례(공군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참고하여 3개 평가지표(불능글래어·사물인지도·식별방해도)를 활용한 유사등화 위험성 평가 방법 신설(안 제74조의2, 별표 5, 별지 16)

나. 유사등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유사등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등 신설(안 제74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pans2021@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우)30103

3) 팩스 : 044-201-563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전화 : 044-201-434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